

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
행정자치위원회 이 동 현 위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
- 현행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는 사무의 선정 및 운영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능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합니다.
- 본 조례의 일부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손해배상 등의 법적 절차를 모두 완료한 뒤에 위탁 취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- 또한,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위탁에 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-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

-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